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837호

나.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 외 41명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15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공정경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정경제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사.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아.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위촉해제 ·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자.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의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의 설치 배경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021.3.25.)되면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에 의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었음.

○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생협력, 공정경제, 노동권 보장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왔으며, 최초 구성(2016.9.30.)이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성과 >

○ 설치목적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사항 심의
○ 구　　성 : 총 18명(최초 구성 : 2016.9.30., 현재 위원 임기만료(2020.10)로 미운영)
○ 주요기능
- 경제민주화정책 과제 발굴
-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을 위해 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협약체결
○ 운영실적 : 총 49회 개최(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44회)
○ 존속기한 : 2021.12.31.
○ 주요성과
-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추진(2016.2.)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제로페이 도입 등 - 가맹·대리점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 노동이사제 도입 및 생활임금제 확산 등

○ 그러나 경제민주화 핵심가치인 상생, 공정, 노동 분야의 개별 조례가 각각 제정되면서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020.10.1.)된 이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공정경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다. 공정경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차이점

○ 신설된 공정경제위원회와 현행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주요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공정경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비교 >

구분	공정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기 능	◦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자문 및 심의**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공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공정경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시·구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자치구의 건의에 의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시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원 수	15명 이내	20명 이내
위 원 장	1명(호선된 민간인 위원)	2명(행정1부시장, 호선된 민간인 위원)
부위원장	호선된 민간인 위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당연직위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간 사	공정경제 관련 담당관 또는 과장	별도 규정없음
존속기한	2026.12.31.	2021.12.31.
위원자격	- 공정경제 및 민생 분야 시민단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정·경제 분야 전·현직 시의원 - 공정경제 관련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정경제 및 민생 분야 정부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경제·민생분야 시민단체 경력1년 이상인 사람 - 재정·경제 분야 전현직 시의원 - 경제민주화 관련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제·민생분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위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공정경제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 없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심의를 위해 20명의 위원이 전체위원회와 3개의 소위원회(상생분야, 공정분야, 노동분야)를 구성하여 활동했음.

< 분야별 조례 및 관련 위원회 현황 >

분야	관련 조례	관련 위원회
상생	◦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2021.3.)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9.12.)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2016.1.) ◦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2010.1.)	희망경제위원회(풀뿌리특위)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공정	◦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2021.3.) ◦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2.11.1.)	공정경제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공정무역위원회
노동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2021.3.) ◦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1.) ◦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020.1.) ◦ 서울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2016.1.)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2015.1.) ◦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2014.3.)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자문위원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또한, 공정경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나(안 제12조제2항·제3항),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행정1부시장과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부위원장이 됨.

- 이처럼 민·관 공동위원장 대신에 민간위원이 단독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면 심의사항 의결시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행정1부시장을 대신해 공정경제 분야의 최고관리자인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한편, 위원의 자격에 '산업·경제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산업현장의 의견이 공정경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2조제3항제3호).

○ 이 밖에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정경제 관련 업무의 담당관이나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을 신설했음(안 제16조).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독립적·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공정경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제민주화위원회 존속여부와 공정경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위원회 구성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